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651-2024-003186



[건물]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167-45

| 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접 수 |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 | 건 물 내 역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|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167-45 | 경량철골구조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17.4㎡ | 2024년11월6일 등기 |
| 2 | | | |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|

| 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순위번호 | 등 기 목 적 | 접 수 | 등 기 원 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 1 | 소유권보존 | | | 소유자 상명종합개발주식회사 214911-005069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110, 3층, 전면(모현동1가, 남옥빌딩)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24년11월6일 등기 |
| 2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4년11월6일 제16652호 | 2024년11월4일 대전지방법원서 산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4타경581 64) | 채권자 주식회사랜드프라퍼티 134511-056657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7, 4917동 1202호(상현동, 광고쌍용포레듀엔) |
| 3 | 압류 | 2025년2월21일 제493130호 | 2025년2월21일 압류(정세과-티 4477) | 권리자 국 처분청 익산세무서장 |

[건물]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167-45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11월07일 06시33분43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651-2024-003186

[건물]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167-45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| 등기명의인 | (주민)등록번호 | 최종지분 | 주 소 | 순위번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|
| 상명종합개발주식회사 (소유자) | 214911-0050692 | 단독소유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110, 3층, 전면(모현동1가, 남옥빌딩) | 1 |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정보 | 주요등기사항 | 대상소유자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4년11월6일 제16652호 | 채권자 주식회사랜드프라퍼티 | 상명종합개발주식회사 |
| 3 | 압류 | 2025년2월21일 제493130호 | 권리자 국 | 상명종합개발주식회사 |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